

# 대학에 바란다 \*

윤종수<sup>1)</sup> | 인천지방법원판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아주 넓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모두 저작물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전통적인 예술창작물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의 현대적인 미디어창작물, 소설, 시, 수필 등의 문학창작물, 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기능적인 창작물도 저작물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중 학습교재, 학술서, 연구보고서, 논문, 강연 등 학문·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저작물을 학술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학술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표현(expression)과 아이디어(idea)의 문제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지 사상이나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이고 어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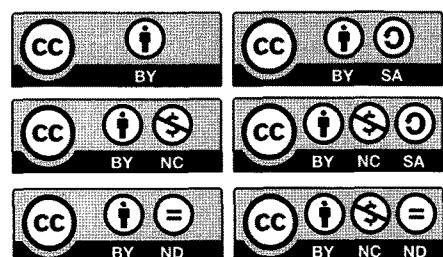
부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처럼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여 특히 와 같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이디어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한 이유는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축적되어 온 만인의 것으로 이를 누군가의 독점에 두는 것은 인류 문화나 지식의 발전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학술저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술저작물도 그 표현에 한해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될 뿐 그 안에 담겨진 사상이나 지식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의 강력한 행사로 학술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배포가 제한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담긴 사상이나 지식에 대한 접근과 배포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 될 위험이 있다. 학술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이나 기타 예술작품과는 달리 표

<sup>1)</sup> 이메일 : iwillbe99@gmail.com, 트위터 @iwillbe99, 홈페이지 <http://www.jayyoon.kr>

현 그 자체의 창의적인 요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핵심은 그 안에 담긴 사상이나 지식이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학술저작물의 본질을 저해하는 잘못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 지식과 학문은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것이며 자유롭고 다양한 교류와 연구, 비판, 분석을 통해 겹중되고 발전된다. 기존의 지식과 학문의 성과는 새로운 지식과 학문의 토대가 되어 계속되는 리믹스와 재창작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표현에 대한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는 이러한 순환과정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학술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권리자의 이해관계 측면이다. 유한한 유형 자원과 달리 무형의 지적 자원인 저작물은 과잉소비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각자의 사용이 경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주 이용할 때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과다한 소비를 제어할 필요도 없고 이용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다만 창작자가 창작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창작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의 제공이 문제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창작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직접적인 금전지급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단지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창작자에 따라서 또는 창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원하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다양하다. 특히 학술저작물의 경우는 그 특성상 다른 저작물에 비

해 금전적 보상보다 다른 보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학자들 사이나 해당 학술분야에서 자신의 학문적 결과가 인정을 받거나 명성이 올라가는 것, 자신의 학술서나 교재를 좀 더 많은 대학과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 자신의 저서가 인용되고 후행 연구로 새로운 학문적 성과가 달성되는 것 등을 원할 수 있고, 금전적 수익도 이용에 대한 직접적 대가보다는 명성에 따르는 강의나 강연의 확대, 학교나 연구소에서의 지위의 상승 등에 의한 간접적 수익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방식은 학술저작물의 본질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보상방식보다 여타모로 바람직하다. 학술저작물이 일반적인 저작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림 1\_CCL의 종류]

이와 같은 차별점 때문에 학술저작물에 있어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활용의 여지도 크다. CCL은 최소한의 조건만 지켜주면 모든 이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겠다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은 자유라이선스의 일종이다. 즉 저

저작자가 저작자표시(BY,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가능하지만 똑 같은 CCL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네 가지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그림 1과 같은 CCL 중 하나를 적용하면, 이용자들은 그 조건을 준수하는 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허락을 받은 소수만이 이용하게 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사전에 포괄적으로 표시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인 허락 없이도 모든 이가 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역시 저작권의 행사이고 라이선스 위반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이미 학술·교육분야에서 CCL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OER(Open Education Resources) 프로젝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OER은 교수, 학생, 연구자들이 교육이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자료를 의미한다. 비록 베타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스스로를 열어줌으로써 교육자원으로서 갖는 가치를 극대화 시킨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조합과 개선이 가능한 OER은 인터넷이라는 효율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배움과 교육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OER은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바, MIT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sup>2)</sup>, 오픈 예일코스(Open Yale Courses)<sup>3)</sup>, 유씨 버클리 웹캐스트(UC Berkeley Webcast)<sup>4)</sup>와 같은 유수 대학들의 열린 강좌들을 비롯하여, 테드(TED)<sup>5)</sup>나 포라티비(FORA TV)<sup>6)</sup>와 같은 공개강연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집단지성에 의한 온라인 백과사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Facebook), 아이튠(iTune), 유튜브 애듀(Youtube EDU)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미디어 서비스들도 OER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적이나 논문이 CCL로 공개되고 있다. CCL은 이 모든 영역에서 OER을 법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로 역할 한다. 즉 OER의 제작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는 한편 OER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OER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OER을 쉽게 찾아내고 원하는 강의교재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

<sup>2)</sup> <http://ocw.mit.edu>

<sup>3)</sup> <http://oyc.yale.edu>

<sup>4)</sup> <http://webcast.berkeley.edu>

<sup>5)</sup> <http://www.ted.com>

<sup>6)</sup> <http://fora.tv>

과 좀 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OER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 액세스 데이터 프로토콜(Open Access Data Protocol)과 오픈 액세스 저널, 오픈 액세스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학술자료에 대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진흥시키려는 학술 저작권 프로젝트(Scholar's Copyright Project)<sup>7)</sup>, OER 검색 서비스인 DiscoverED<sup>8)</sup>, OER Commons<sup>9)</sup>, OER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OER들을 모듈로 묶어서 제공하는 일종의 통합 서비스인 Connexions<sup>10)</sup>, 대학 수준의 열린 학습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P2PU<sup>11)</sup>,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OER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향상을 꾀하는 Curriki<sup>12)</sup> 등이 그 예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오픈코스웨어를 구축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고,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KOCW라 하여 OCW와 OER의 리파지토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도 있으며, SNOW와 같이 외국의 공개 강연자료를 취합하여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CCL이 적용된 자료를 이용하여 공개 학습교재를 제작하는 배나

사 프로젝트<sup>13)</sup>와 같은 사례 등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OCW와 같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은 예산이나 인식의 부족, 이해당사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술 논문이나 교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도모하는 시도들이 거세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2005년에 국내에 CCL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가장 활발한 활용이 있으리라 기대를 했던 곳이 바로 대학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술저작물은 본질적으로 CCL과 친하고,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지식창조가 이루어지고 혁신을 추구하는 창작자들이 넘치는 상아탑이기 때문에 CCL은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대학은 다른 곳에 비해 오히려 CCL의 활용이 부진한 곳에 속한다.

대학에서 CCL의 활용이나 OER의 확산이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교육, 그리고 참여, 개방, 공유로 대표되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CCL은 저작권의 무시나 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CCL은 ‘현명한’ 저작권을 의미한다. 저작권과 학

<sup>7)</sup> <http://sciencecommons.org/projects/publishing/>

<sup>8)</sup> <http://discovered.creativecommons.org/search/>

<sup>9)</sup> <http://www.oercommons.org>

<sup>10)</sup> <http://www.cnx.org>

<sup>11)</sup> <http://p2pu.org/>

<sup>12)</sup> <http://www.curriki.org>

<sup>13)</sup> <http://www.edushare.kr/>

술저작물이 어떤 특성이 있고, 교육과 지식의 발전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개방과 참여, 공유의 흐름이 우리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무엇이 자신과 대학, 그리고 공동체에 이로운 것인지 선택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현명한 저작권자’가 CCL이 바라는 저작권자의 모습이다. CCL은 이념적인 추종이나 너그러운 선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혁신과 효율을 끌어내려는 창의적인 이기심이 그 동력이다. 현명한 저작권자들이 그러한 인식 하에 교육과정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하는 소소한 시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d의 이용과 재생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다시 이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순환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교재와 학술서의 공개, 더 나아가 강의 과정과 코스웨어의 공개를 시도하는 것, 그럼으로써 기성권위에 안주하고 변화하지 않은 자는 도태되고 학문의 자유와 혁신, 지성들의 상호작용이 넘쳐나는 대학을 만들어 내는 것, 종국적으로는 사회전체의 개방과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학에 바라는 것이고 CCL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다.<sup>14)</sup>

## 필자소개

### 윤종수 | 인천지방법원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에 판사로 임관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CC Korea 프로젝트 리드로도 활동하고 있다

<sup>14)</sup> CC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ckorea.org>, <http://www.letscc.net> <http://www.jayyoon.kr>을 참조하기 바란다.